

행 정 자 치 부

훈계·시정 요구

제 목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 미준수

기 관 명 경상남도

관 계 기 관 경상남도 본청

관 련 자 경상남도 ○○○○과

지방○○○○○ ○○○

내 용

지방○○○○○ ○○○은 2010. 1. 26.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○○○○업무를 담당하고 있다.

「지방공무원법」 제48조에 따르면 모든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며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, 같은 법 제50조에 따르면 공무원은 소속 상사의 허가 없이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직장을 이탈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다.

경상남도에 대한 정부합동감사기간 중 수감기관 소속 지방○○○○○ ○○○에 대한 근무불성실 등으로 민원이 접수됨에 따라 2015. 1. 1.부터 2015. 12. 31까지 출장내역서를 검토한 결과 5회에 걸쳐 출장 신청 후 관내 병원 치료(척추 협착 등)를 받았으며, 연가, 병가, 조퇴, 외출 등의 허가 없이 2회에 걸쳐 근무시간 내 병원 치료를 받는 등 공무원으로서 지켜야 할 의무사항을 미준수하였다.

[출장 및 진료 등 현황]

출장 등 현황		출장비 지급	진료현황	
일시	목적		일시	병원명
2015.6.17	-	-	15.6.17	창원○○○○병원
2015.6.24. (10:00~18:00)	○○○○○○○○ 추진 업무지도(창원)	20,000원	15.6.24.	창원○○○○병원
2015.7.1	-	-	15.7.1	창원○○○○병원
2015.7.3	○○○○ 기공식 행사 참석(진주)	40,000원	15.7.3.	창원○○○○병원

2015.7.8. (13:00~18:00)	○○○○업무 추진 독려	20,000원	15.7.8	창원○○○○병원
2015.8.19. (09:30~14:00)	○○민원 현지조사(창원)	20,000원	15.8.19	창원○○○○병원
2015.9.16.~ 2015.9.17	2015년 하반기 ○○검사(합천)	80,000원	15.9.16	창원○○○○병원

※ 경상남도 제출자료 재구성

조치할 사항 경남도지사는

[훈계] 위 관련자를 훈계처분 하시기 바랍니다.

[시정] 공무원 복무 규정 위반으로 잘못 지급된 출장비 180천원을 반납 처리하시기 바라며 앞으로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소속 직원들의 복무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